2025년 우리의 다짐
더욱 뜨겁게, 가장 푸르게

근로복지공단 30주년

-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및 업무처리 방법

2025. 12. 31.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

순 서

Ⅰ. 목적 ····· 1

Ⅱ. 관련근거 ····· 1

Ⅲ. 주요 개정내용 및 업무처리 방법 ····· 1

1. 상급병실 사용료 개선 ····· 2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료(소모품) 신설 ····· 3
3.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개선 ····· 4
4. 치과보철 개선, 수가인상 ····· 5
5. 실리콘형 팔의지 및 근전전동의수 신설, 개선 ····· 7
6. 의지 및 휠체어 수리료 신설, 개선 ····· 10
7.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개선 ····· 12
8.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수가인상 ····· 14
9.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신설, 개선 ····· 15
10. 이송료(근거리 대중교통) 개선 ····· 18
11.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 개선, 수가인상 ····· 20
12. 예방접종비용 개선 ····· 22
13. 문구 및 용어 정비 등 개선 ····· 23

Ⅳ. 적용시기 ····· 30

【별첨】

1. 재활보조기구 참고자료 ····· 31
2. 간편형 다차원심리검사 참고자료 ····· 34
3. 이송료 정액제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 35

Ⅰ 목적

○ 적정 요양 및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급여 항목 급여화 추진

○ 비급여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및 유관단체 건의사항 검토하여 산정기준 개선

○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적용방안 개선을 통한 업무 표준화 · 효율화 달성

Ⅱ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3호

Ⅲ 주요 개정내용 및 업무처리 방법

< 주요 개정 내용 >

❖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 **(급여신설) 재활보조기구 등 20종**

-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실리콘형 팔 의지 및 수리료 등
- 간편형 다차원심리검사, 본인부담·비급여치료비 전자청구 대행 수수료 등

▪ **(기준개선) 상급병실 사용료 등 18종**

- 치과보철 지급기준, 재활보조기구(의지) 지급원칙 개선 등 [별표2]
- 발급수수료 지급원칙 및 이송료 근거리 지급기준 개선 등 [별표2]
-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기준 개선, 예방접종비용 기준 개선 등 [별표2]

▪ **(수가인상) 주조금관 등 53종**

- 주조금관, 도재전장주조관 등 치과보철료 12개 항목 수가인상
- 위팔 의지 소켓교환, 의수교환 등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40개 항목 수가인상
- 도수치료(재활전문치료) 수가 인상

❖ 업무 표준화를 위한 문구 및 용어 정비

- **(문구·용어정비)**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 10종

1. 상급병실 사용료 개선

□ 관련 규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5조제3항

□ 개정 내용

○ '19.7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 입원료 전액이 비급여대상으로 상급병실(특실) 적용 해석 논란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상급병실은 1인실로 명시, 특실은 상급병실(1인실) 비용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개선

* '18.7월부터 종합병원 2인실까지 급여, '19.7월부터 병원의 2인실까지 급여로 적용되어 1인실 입원료 전액이 비급여 대상(요양·정신·치과병원 제외)

□ 업무처리 방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5조제3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 상급병실(1인실) 입원료 전액을 요양급여로 인정

현 행	개 정
제5조(비급여대상) < 생략 > 1. ~ 2. < 생략 > 3. 상급병실 사용료. 다만, ~ <생략> 가. ~ <중략>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제5조(비급여대상)** < 생략 > 1. ~ 2. < 생략 > 3. 상급병실 사용료. 다만, ~ <생략> 가. ~ <중략>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1인실) 사용 중 1인실을 제외한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특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상급병실(1인실) 비용으로 인정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료 [소모품] 신설

□ 관련 규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1] 장애인보조기기

□ 개정 내용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료(소모품) 지급기준이 산재보험과 달리 적용됨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 비용 경감 및 원활한 재활지원을 위해

- 진료담당 의사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필요성에 대한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수리 가능하도록 수리료(소모품) 지급 근거 마련

  * **(산재보험)** 의지 내구연한 내 횟수제한 없이 인정, **(건강보험)** 의지 내구연한 내 1회 인정

□ 업무처리 방법

○ 재활보조기구(장애인보조기기) 수리가 필요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 재활보조기구(장애인보조기기) 품목 및 내구연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수리료(소모품) 지급여부를 결정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별표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table>
<tr><th>행위목록</th><th>분류</th><th>분류번호</th><th>산정기준</th></tr>
<tr><td>장애인 보조기기</td><td>< 신설 ></td><td></td><td></td></tr>
</table></td><td>[별표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table>
<tr><th>행위목록</th><th>분류</th><th>분류번호</th><th>산정기준</th></tr>
<tr><td>장애인 보조기기</td><td>수리료 (소모품)</td><td>타-35_</td><td>수리료(소모품)는 재활보조기구 내구연한 내 수리가 필요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다.</td></tr>
</table></td></tr>
</table>

3.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개선

□ 관련 규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1] 제7장 이학요법료

□ 개정 내용

○ **(산정횟수 초과 산정기준 삭제)** 이학요법료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외래 1일1회, 입원 1일2회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인정

* 다발성 상병인 경우 부위별 물리치료 실시하여 인정횟수 초과 발생

- 인증병원을 통한 다양한 재활치료 지원으로 인정횟수 초과 내역이 미미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이학요법료 인정기준 개선

> * '99년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진료 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통원 인정 횟수 적용 없이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 개선('00. 8.19.~ 급여 적용)

□ 업무처리 방법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별표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table>
<tr><th>행위목록</th><th>분류</th><th>분류번호</th><th>산정기준</th></tr>
<tr><td>제7장
이학요법료</td><td>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td><td>사101~106
사110~120
사121~131
서121
서141</td><td>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td></tr>
</table></td><td>[별표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table>
<tr><th>행위목록</th><th>분류</th><th>분류번호</th><th>산정기준</th></tr>
<tr><td>제7장
이학요법료</td><td colspan="3">< 삭제 2025. 12. 31. ></td></tr>
</table></td></tr>
</table>

4. 치과보철 개선, 수가인상

□ 관련 규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1절 치과보철

□ 개정 내용

○ **(보철원칙 개선)** 합금 제조방법 등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을 반영하여 주조금관 및 3/4금관 금속함량 기준은 50wt% 이상으로 보철원칙 개선

- 포스트(캐스트코아)는 기성품 여부가 중요하므로 재료대 기준 삭제

○ **(수가인상)** 원자재(금, 귀금속 등)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 치과분야 수가 인상률을 반영한 치과보철 12개 항목 수가 인상

* **(치과보철 인상율)** '20년3.1%→'21년1.5%→'22년2.2%→'23년2.5%→'24년3.2% →'25년3.2% →'26년2.0%

- **(주조금관 등 7종)** '20년 이후 수가 인상율 반영한 17.7% 인상

↳ ① 주조금관, ②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③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 ④ 악안면 보철(귀금속: 유치악), ⑤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유치악), ⑥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유치악), ⑦ 임시레진관

- **(3/4금관 등 4종)** '23년 이후 수가 인상율 반영한 10.9% 인상

↳ ①3/4금관, ②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③포스트(캐스트코아), ④포스트(기성품)

- **(지르코니아크라운)** '21년 이후 수가 인상율 반영한 14.6% 인상

□ 업무처리 방법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

제1절 치과보철

[보철원칙 및 금액]

<table>
<tr><th>분류번호</th><th>분류</th><th>보철원칙</th><th>금액(원)</th></tr>
<tr><td>카-1</td><td>주조금관</td><td>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td><td>425,000</td></tr>
<tr><td>카-2</td><td>3/4금관</td><td>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td><td>318,410</td></tr>
</table>

</td><td>

제1절 치과보철

[보철원칙 및 금액]

<table>
<tr><th>분류번호</th><th>분류</th><th>보철원칙</th><th>금액(원)</th></tr>
<tr><td>카-1</td><td>주조금관</td><td>50wt.% 이상의 ----------.</td><td>500,230</td></tr>
<tr><td>카-2</td><td>3/4금관</td><td>50wt.% 이상의 ----------</td><td>364,900</td></tr>
</table>

</td></tr>
</table>

현 행				개 정			
		금합금으로 하며,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	
카-3	도재전장 주조관 (귀금속)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77.8~87.5%, 백금 4.0~9.1%, 팔라디움 5.5~9.9%의 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 이상이어야 한다.	510,000	카-3	도재전장 주조관 (귀금속)	현행과 같음	584,460
카-4	도재전장 주조관 (비귀금속)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347,650	카-4	도재전장 주조관 (비귀금속)	현행과 같음	409,180
카-5	국소의치 (백금가금 주조)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 백금가금은 순금 70%, 은 10%, 동 10%, 백금 10%의 비율로 하면서 백금의 순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1,718,470	카-5	국소의치 (백금가금 주조)	현행과 같음	2,022,640
카-9	포스트 (캐스트코어)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3분의 2 이상이 파절되거나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치료 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 사용재료는 팔라디움이 25% 이상인 팔라디움·은합금으로 한다.	170,000	카-9	포스트 (캐스트코어)	현행과 같음 ○ < 삭제 2025. 12. 31. >	194,820
카-10	포스트 (기성품)	치관부의 3분의 2 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치수치료한 치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 중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110,500	카-10	포스트 (기성품)	현행과 같음	126,630
카-11	악안면보철 (귀금속: 유치악)	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 절제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에 대해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1,677,290	카-11	악안면보철 (귀금속: 유치악)	현행과 같음	1,974,170

현 행				개 정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용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는 부분틀니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는 완전틀니에 준한다.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보철원칙과 같다.	1,179,780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 유치악)	현행과 같음	1,388,600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보철원칙과 같다.	1,487,000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 무치악)	현행과 같음	1,750,200
카-14	임시레진관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26,710	카-14	임시레진관	현행과 같음	31,440
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소구치부, 대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재료는 순수 지르코니아(ZrO2)에 약3~5% 정도의 안정화제(stabilizer)를 첨가하며, 국제 표준화 시험법(ISO 6872, ISO 13356, ISO 10993)에 적합하여야 한다.	502,380	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	현행과 같음	575,730

5. 실리콘형 팔의지 및 근전전동의수 신설, 개선

□ 관련 규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2절 재활보조기구

□ 개정 내용

○ **(실리콘형 위·아래 팔의지 신설)** 의지의 현가방식(신체에 착용하는 방법)의 다양화에 따라 절단 산재근로자의 사용 편의성 제공 등을 위해

- 실리콘라이너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착용하는 실리콘형 팔의지 급여 신설

↳ **(기존)** 위·아래팔 미관형·기능형 의지 → **(신설)** 위·아래팔 미관형·기능형, 미관형(실리콘형) 의지

○ **(근전전동의수 신설 및 개선)** 근전전동의수 적용 대상자 명확화를 위해 ①건강보험 아래팔 의지 유형과 동일하게 개선 및 ②아래팔 근전전동의수 신설

↳ **(①유형 삭제)** 아주짧은 아래팔·짧은 아래팔·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품목 삭제

↳ **(②신설)**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신설 → 내구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 금액은 5,610,000원

□ 업무처리 방법

○ **(위팔·아래팔 의지-미관형(실리콘형))** 환부의 길이 및 형태가 실리콘라이너 착용이 가능한 위팔·아래팔 절단자에 인정

○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인정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9. <생략>

가. 근전전동의수: 아주 짧은 아래팔, 짧은 아래팔, 표준 아래팔, 손목관절

나. ~ 라. <생략>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 의지

<table>
<tr><th>분류번호</th><th>분류</th><th>지급대상</th><th>금액(원)</th><th>내구연한</th></tr>
<tr><td><신설></td><td></td><td>< 신설 ></td><td></td><td></td></tr>
<tr><td><신설></td><td></td><td>< 신설 ></td><td></td><td></td></tr>
</table>

</td><td>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9. <생략>

가. 근전전동의수: 아래팔, 손목관절

나. ~ 라. <생략>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 의지

<table>
<tr><th>분류번호</th><th>분류</th><th>지급대상</th><th>금액(원)</th><th>내구연한</th></tr>
<tr><td>타3-1다</td><td>위팔의지-미관형(실리콘형)</td><td>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되었으며, 환부의 길이 및 형태가 실리콘라이너 착용이 가능한 경우</td><td>2,278,550</td><td>4년</td></tr>
<tr><td>타5-1다</td><td>아래팔 의지-미관형(실리콘형)</td><td>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 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되었으며, 환부의 길이 및</td><td>1,581,340</td><td>3년</td></tr>
</table>

</td></tr>
</table>

현 행					개 정				
							형태가 실리콘라이너 착용이 가능한 경우		
타6-1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팔꿈치 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되었으며 단단부 잔존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 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610,000	5년	타6-1	< 삭제 2025 12 .31. >			
타7-1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 의수	팔꿈치 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되었으며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 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타7-1	< 삭제 2025 12 .31. >			
타8-1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 의수	팔꿈치 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되었으며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타8-1	< 삭제 2025. 12 .31. >			
<신설>		< 신설 >			타6-2	아래팔 근전전동 의수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5,610,000	5년

6. 의지 및 휠체어 수리료 신설, 개선

□ 관련 규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2절 재활보조기구

□ 개정 내용

○ **(위팔·아래팔 의지 유형별 교환 비용)** 미관형, 기능형 구분없이 인정하고 있는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수리료를 유형별로 수리비용 분류

- **(위팔·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미관형/개선)** 기존 위팔·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비용을 미관형으로 명칭 개선

  * (기존) 위팔·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 (개선) 위팔·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미관형)

- **(위팔·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기능형/신설)** 팔의지 유형별 분류에 따른 기능형 의지 소켓 교환 비용 급여 신설

- **(위팔·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신설)** 실리콘형 의지 신설에 따른 현가장치(락장치) 부착된 교환 비용 급여 신설

- **(위팔·아래팔 의지 실리콘라이너 교환 신설)** 실리콘형 의지 신설에 따른 실리콘라이너 교환 비용 급여 신설

○ **(넓적다리의지 대퇴보자기 교환-일반형/신설)** 넓적다리의지-일반형 착용을 위해 사용하는 대퇴보자기 노후 또는 파손에 따른 교환비용 급여 신설

↳ **(대퇴보자기)**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착용 시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소모품

○ **(활동형 휠체어 수리료 신설)** 활동형 휠체어의 시트·등받이·뒷바퀴·핸드림 교환비용 급여 신설

↳ **(기존)** 일반형 및 전동형 휠체어는 해당 수리비용 있음

○ **(전동휠체어 14인치 뒷바퀴 전체 교환 신설)** 전동휠체어 12인치 및 16인치는 뒷바퀴 전체 교환 수리료가 있으나, 14인치 뒷바퀴 전체 교환 비용이 없어

- 전동휠체어 14인치 뒷바퀴 전체 교환 수리료 급여 신설

□ 업무처리 방법

○ **(위팔·아래팔 의지 유형별 교환 비용)** 위팔·아래팔 의지 지급품목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유형별 수리비용 지급

현 행

제2절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팔의지	타38	위팔 의지 소켓 교환	201,000
	< 신설 >		
	< 신설 >		
	< 신설 >		
	타41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148,000
	< 신설 >		
	< 신설 >		
	< 신설 >		

개 정

제2절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팔의지	타38	위팔 의지 소켓 교환(미관형)	현행과 같음
	타38-2	위팔 의지 소켓 교환(기능형)	553,510
	타38-3	위팔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665,400
	타38-4	위팔 의지 실리콘라이너 교환	408,690
	타41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미관형)	현행과 같음
	타41-2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기능형)	482,660
	타41-3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556,330
	타41-4	아래팔 의지 실리콘라이너 교환	408,690

○ **(넓적다리의지 대퇴보자기 교환-일반형)** 넓적다리의지-일반형 착용을 위해 사용하는 대퇴보자기는 최초 재활보조기구 제작시 1개 무상지급

- 넓적다리의지(일반형) 대상자 중 대퇴보자기 노후 및 파손으로 교체하는 경우 수리비용 지급

* 넓적다리 의지 중 일반형은 대퇴보자기, 실리콘형은 실리콘라이너 사용

현 행

제2절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다리의지	< 신설 >		

개 정

제2절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다리의지	타52-2	넓적다리 의지 대퇴보자기 교환(일반형)	82,500

○ **(휠체어 수리비용)** 활동형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지급품목을 확인하여 지급품목에 해당하는 수리비용 지급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
제2절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table>
<tr><th>구분</th><th>분류번호</th><th>분류</th><th>금액(원)</th></tr>
<tr><td rowspan="5">휠체어</td><td>< 신설 ></td><td></td><td></td></tr>
<tr><td>< 신설 ></td><td></td><td></td></tr>
<tr><td>< 신설 ></td><td></td><td></td></tr>
<tr><td>< 신설 ></td><td></td><td></td></tr>
<tr><td>< 신설 ></td><td></td><td></td></tr>
</table>
</td><td>
제2절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table>
<tr><th>구분</th><th>분류번호</th><th>분류</th><th>금액(원)</th></tr>
<tr><td rowspan="5">휠체어</td><td>타68-2</td><td>시트 교환(활동형)</td><td>54,190</td></tr>
<tr><td>타69-2</td><td>등받이 교환(활동형)</td><td>61,410</td></tr>
<tr><td>타70-7</td><td>뒷바퀴 교환(활동형)</td><td>126,440</td></tr>
<tr><td>타74-2</td><td>핸드림 교환(활동형)</td><td>85,000</td></tr>
<tr><td>타77-6</td><td>14인치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td><td>127,500</td></tr>
</table>
</td></tr>
</table>

7.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개선

□ 관련 규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2절 재활보조기구

□ 개정 내용

○ **(지급원칙4·6)** 의학적 필요성 여부 판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 개선 및 의지 유형 분류에 따른 명칭 반영

* ①상지의지 → 팔의지, ②반자동형(기능형) → 기능형(반자동형, 후크형)

- **(지급원칙5)** 실리콘형 소켓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일반형 소켓 지급으로 개선 및 의지 유형분류에 따른 명칭 반영

* 하지의지 → 다리의지

○ **(지급원칙10)** 근전전동의수 유형 통합 및 한국산업표준 KS P 8511 규격에 의한 파지력 내구성 측정방법 명시

○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팔 보조기와 척추 보조기 분류를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유형과 동일하게 개선

□ 업무처리 방법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 ~ 3. < 생략 >

4. 상지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한다.

5. 하지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 할 수 있다.

6. 넓적다리의지는 타-14-1(공압식 또는 유압식)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넓적다리 의지를 지급하며, 장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타15(인공지능식)를 지급한다.

7. ~ 9. < 생략 >

10. < 생략 >

가. ~ 나. <생략>

다. 근전전동의수

1) 의수의 전체 파지력은 100N 이상 이어야 한다.

2) ~ 3) <생략>

4) 의수의 내구성 시험은 10,000회 반복 개폐 동작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11. ~ 13. < 생략 >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2. 보조기

구분	분류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연한
팔 보조기	타-23-다	짧은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생략>	<생략>	<생략>
척 추 보조기	타-24-라	목뼈 보조기	<생략>	<생략>	<생략>
	타-25-마	등·허리뼈보조기 -나이트식	<생략>	<생략>	<생략>

</td><td>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 ~ 3. < 생략 >

4. 팔의지는 기능형(반자동형, 후크형)을 ----------. 다만, 신체부분(Stump)이 기능형 의수를 장착하기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할 수 있다.

5. 다리의지는 실리콘형 소켓을 ----------. 다만,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아주 짧거나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을 장착하기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

6. ----------. 다만, 진료담당 의사의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 지급할 수 있다.

7. ~ 9. 현행과 같음

10. < 생략 >

가. ~ 나. <생략>

다. 근전전동의수

1) KS P 8511 규격에 따른 의수의 전체 파지력은 100N 이상 이어야 한다.

2) ~ 3) <생략>

4) 의수의 내구성 시험은 KS P 8511 규격에 따른 10,000회 반복 개폐 동작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11. ~ 13. 현행과 같음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2. 보조기

구분	분류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연한
팔 보조기	타-23-다	손목-손 보조기 - 각도조절형	<생략>	<생략>	<생략>
척 추 보조기	타-24-라	목 보조기	<생략>	<생략>	<생략>
	타-25-마	등·허리보조기 -나이트식	<생략>	<생략>	<생략>

</td></tr>
</table>

8.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수가인상

□ 관련 규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2절 재활보조기구

□ 개정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급여신설 후 수가인상 검토 없이 운영하고 있어 '06년부터 급여 적용한 팔·다리 의지 등 수리료 총 40개 품목에 대해 수가 인상

□ 업무처리 방법

현 행

제2절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팔의지	타38	위팔 의지 소켓 교환	201,000
	타39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538,000
	타39-1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930,000
	타41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148,000
	타43	의수 교환(기능형)	532,000
	타44	케이블 교환	119,000
	타45	어깨밴드 교환	24,000
	타45-2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964,000
	타45-5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2개1세트	105,000
다리 의지	타48	발목장식 교환(일반형)	158,000
	타50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137,000
	타51	흡인 밸브 교환	14,000
	타52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24,000
	타53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104,000
	타55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21,000
	타56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119,000
	타58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41,000
	타59-1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75,000
	타59-2	회전테이블 교환	302,000
	타59-6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546,000
	타59-9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197,000
	타59-11	디지털 컵 교환	108,000
보조기	타62	발목장식 교환	33,000
	타63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21,000
	타66-1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100,000

개 정

제2절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팔의지	타38	위팔 의지 소켓 교환(미관형)	392,990
	타39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646,000
	타39-1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1,232,500
	타41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미관형)	244,010
	타43	의수 교환(기능형)	595,000
	타44	케이블 교환	141,990
	타45	어깨밴드 교환	34,890
	타45-2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1,105,000
	타45-5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2개1세트	160,000
다리 의지	타48	발목장식 교환(일반형)	255,000
	타50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291,870
	타51	흡인 밸브 교환	29,000
	타52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42,500
	타53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212,500
	타55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42,500
	타56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297,500
	타58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127,500
	타59-1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127,500
	타59-2	회전테이블 교환	595,000
	타59-6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1,015,030
	타59-9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255,000
	타59-11	디지털 컵 교환	212,500
보조기	타62	발목장식 교환	240,690
	타63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51,000
	타66-1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133,520

현 행				개 정			
휠체어	타71-1	앞바퀴 교환(전동)	31,000	휠체어	타71-1	앞바퀴 교환(전동)	72,250
	타72	팔받침 교환(일반형)	12,000		타72	팔받침 교환(일반형)	36,500
	타73	발판 교환(일반형)	14,000		타73	발판 교환(일반형)	34,000
	타74	핸드림 교환(일반형)	25,000		타74	핸드림 교환(일반형)	42,500
	타75	브레이크 교환(일반형)	14,000		타75	브레이크 교환(일반형)	27,630
	타76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29,000		타76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76,500
	타77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58,000		타77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114,750
	타78	16″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85,000		타78	16″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148,750
	타79	시트 교환(전동)	29,000		타79	시트 교환(전동)	63,750
	타80	등받이 교환(전동)	35,000		타80	등받이 교환(전동)	72,250
	타81	팔받침 교환(전동)	14,000		타81	팔받침 교환(전동)	38,250
	타82	발판 교환(전동)	16,000		타82	발판 교환(전동)	42,500
	타83	옆받이 교환(일반형)	16,000		타83	옆받이 교환(일반형)	27,630
	타84	옆받이 교환(활동형)	26,000		타84	옆받이 교환(활동형)	63,750
	타86	요크 교환(활동형)	43,000		타86	요크 교환(활동형)	85,000

9.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신설, 개선

□ 관련 규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3절 발급수수료 등

□ 개정 내용

○ **(요양비청구서 서식 개선)** 요양업무처리 규정 개정으로 요양비청구서 서식 개선

- [기존] 요양비청구서(요양비 · 간병료 · 이송비 · 보조기) → [개선] 본인부담치료비 청구서(요양비 · 본인부담금확인), [신설] 간병료 · 이송비 · 보조기 청구서

- **(수수료 금액)** 요양비청구서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

○ **(전자청구 대행 수수료 신설)** 본인부담치료비 전자청구 활성화를 위해 토탈서비스(API 청구 포함) 등 의료기관 대행 신청 수수료 신설

- 본인부담치료비 청구서 및 비급여치료비 승인요청서를 토탈서비스 이용 공단이 제공하는 서식으로 산재근로자 진료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산정

-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 단가 개선)** 전자청구 대행 수수료 신설로 공단이 별도로 요청하여 받는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는 단가 인하

  * (금액) [기존] 5,000원 → [개선] 3,000원으로 인하

○ **(추가상병 신청서용 소견서 수수료 신설)** 요양 중 부상이나 발병 또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추가상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수수료 신설

- 재요양 신청과 추가상병 신청서가 동시에 청구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너-6) 금액만 산정

○ **(심리검사 수가 간편형 신설)** 재해초기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심리상태를 조기 파악하여 적기에 심리안정서비스 지원 위해

- 기존 다차원심리검사(L형) 90문항 중 핵심 문항을 선정하여 **간편형 다차원 심리검사(15문항)** 신설

- 트라우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상 재해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발생 초기에는 간편형 다차원심리검사(15문항), 요양 중에는 기존 L형 다차원심리검사(90문항) 실시

□ 업무처리 방법

○ **(본인부담치료비 청구서 확인)** 요양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본인부담치료비 청구서(요양비, 본인부담금확인)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산정

- **(간병료·이송비·보조기 청구서 확인)** 요양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2 서식] 간병료·이송비·보조기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산정

○ **(전자청구 대행 수수료)** 본인부담치료비 청구서 및 비급여치료비 승인 요청서를 토탈서비스(API 청구 포함) 등 이용하여 의료기관이 제출 시

-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을 공단에서 제공한 서식으로 작성한 경우 **본인부담·비급여 치료비 전자청구 대행 수수료*** 지급

  * (동시 산정 불가) ①진료내역 확인 수수료(너-20), ②토탈서비스이용 수수료(너17)

> * **(주의 !) 전자청구 대행수수료**
>
> - 연속된 입원 또는 통원기간을 월별 분리청구 하거나 일일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연속된 입원 또는 통원기간은 1회 청구로 인정하여 1회 수수료 지급
>
> - 공단이 제공하는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모두 작성하여 토탈서비스 등 전자청구 한 경우 인정
>
> ※ 공단이 제공하는 서식(엑셀)을 공란으로 제출하거나 PDF 등 파일로 제출 시 수수료 산정불가

○ **(추가상병 신청서용 소견서)** 추가상병 신청시 요양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산정

* 재요양 신청서와 추가상병 신청서 동시 청구시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너-6) 금액만 산정

○ **(간편형 다차원심리검사)** 의료기관이 간편형 다차원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산정

* 다만, 토탈서비스 등 전산프로그램 개선시('26. 하반기 완료 예정)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도 검사비용 인정, 진료비 청구시 검사일자 등 기재

↳ **세부 업무처리방법 별도 안내 예정**

- **(인정횟수)** 간편형 다차원심리검사는 요양기간 중 1회만 인정하며, L형 다차원심리검사와는 검사시기가 다르므로 각각 산정 가능

* 검사 이력이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실시한 경우 수수료 추가 산정은 불가함

현 행	개 정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지급원칙]	[지급원칙]
18. < 신설 >	18. 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요양비, 본인부담금) 확인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중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비용을 산재근로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요양비)을 청구한 경우, 법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 범위 여부 확인을 위한 본인부담금을 청구한 경우에 산정한다.
19. < 신설 >	19. 간병료·이송비·보조기 청구서 확인 수수료는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중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을 부득이하게 산재근로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 청구를 위해 제출한 경우 산정 한다. 이 경우, 필요성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20. < 신설 >	20. 간편형 다차원심리검사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해 발생 초기에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1회만 인정하며, 다차원심리검사(L형)와는 시행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21. < 신설 ></td><td>시기가 다르므로 별도로 산정 할 수 있다.
21. 본인부담·비급여 치료비 전자청구 대행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인의 위임(동의)를 받아 토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대행 신청한 경우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에 대해 공단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토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td></tr>
<tr><td>22. < 신설 ></td><td>22. 추가상병 신청서용 소견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신청을 한 경우 산정한다. 이 경우, 재요양과 추가상병 신청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수수료만 산정할 수 있다.</td></tr>
<tr><td>[수수료]
<table>
<tr><th rowspan="2">분류 번호</th><th rowspan="2">분류</th><th colspan="4">금액(원)</th></tr>
<tr><th>상급종합병 원</th><th>종합병원</th><th>병원</th><th>의원</th></tr>
<tr><td>너-5</td><td>요양비 청구서 확인</td><td>6,000</td><td>5,000</td><td>4,000</td><td>3,000</td></tr>
<tr><td>< 신설 ></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신설 ></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신설 ></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너-20</td><td>진료내역 확인수수료</td><td>5,000</td><td>5,000</td><td>5,000</td><td>5,000</td></tr>
<tr><td>< 신설 ></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수수료]
<table>
<tr><th rowspan="2">분류 번호</th><th rowspan="2">분류</th><th colspan="4">금액(원)</th></tr>
<tr><th>상급종합병 원</th><th>종합병원</th><th>병원</th><th>의원</th></tr>
<tr><td>너-5</td><td>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 확인(요양비, 본인부담금)</td><td>6,000</td><td>5,000</td><td>4,000</td><td>3,000</td></tr>
<tr><td>너-5-2</td><td>간병료 이송비보조기 청구서 확인</td><td>6,000</td><td>5,000</td><td>4,000</td><td>3,000</td></tr>
<tr><td>너11-2</td><td>간편형 다차원심리 검사수수료</td><td>6,500</td><td>6,500</td><td>6,500</td><td>6,500</td></tr>
<tr><td>너-17-4</td><td>본인부담·비급여 치료비 전자청구 대행 수수료</td><td>5,000</td><td>5,000</td><td>5,000</td><td>5,000</td></tr>
<tr><td>너-20</td><td>진료내역 확인수수료</td><td>3,000</td><td>3,000</td><td>3,000</td><td>3,000</td></tr>
<tr><td>너-21</td><td>추가상병 신청서용 소견서</td><td>10,000</td><td>10,000</td><td>10,000</td><td>10,000</td></tr>
</table></td></tr>
</table>

10. 이송료(근거리 대중교통) 개선

□ 관련 규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6절 이송료

□ 개정 내용

○ **(실비 → 정액제)** 지자체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근거리 교통요금을 전국 단일 기준(정액제) 적용으로 개선

- **(비용산정)**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 이용시 편도 2,000원, 1일 최대(왕복) 4,000원 적용하되, 실제 소요비용이 편도 2,000원을 초과한 경우 실제 비용 지급

□ 업무처리 방법

○ 산재근로자가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시내·마을버스, 전철 등)을 이용 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이송의 범위)에 따른 이송비 청구

- 의료기관 통원확인서, 자문의사회의 참석여부 등 확인하여 편도 2,000원, 왕복 4,000원 정액 지급

  *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중교통비 무료 이용 대상자는 지급불가

- 소요비용이 편도 2,000원을 초과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지급 가능

  * 세부 전산 입력방법 및 업무처리방법은 [별첨3] 참고

현 행	개 정
제6절 이송료	**제6절 이송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생략 >	1. < 생략 >
2. < 신설 >	2. 근거리 대중 교통수단 교통비는 순로(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금액으로 하되, 근거리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편도 정액(2,000원)으로 지급한다.
2.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구급차 및 근거리 교통수단 이외의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등급 기준으로 지급	가. 현행과 같음
나.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나. 현행과 같음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3. 숙박비 및 식대는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 중 숙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별표 2 제2호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 한다.
[교통수단별 등급기준]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등급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1등급</th><th>2등급</th></tr>
<tr><td>근거리 대중 교통수단</td><td>-</td><td>시내·외버스, 전철,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td><td>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등 등급 구분 없이 실제 부담한 금액</td></tr>
</table></td><td>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교통수단별 등급기준]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등급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1등급</th><th>2등급</th></tr>
<tr><td>현행과 같음</td><td>-</td><td>현행과 같음</td><td>---------- ---------- ---------- 정액 (※ 다만, 1일 정액요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금액)</td></tr>
</table></td></tr>
</table>

11.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 개선, 수가인상

□ 관련 규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 개정 내용

○ **(실시자 진료과목 기준개선)** 의료현실을 반영하여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에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

○ **(도수치료 수가인상)** 시장가격 대비 인정금액이 낮아 의료현장의 비급여 금액을 고려하여 수가인상

- **(금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기관 지역별·규모별 정보공개 금액의 중간금액 85% 적용(의료기관 종별 가산 인정)

* **(종별가산 적용)** 상급종합 88,400원, 종합 82,960원, 병원 72,080원, 의원 68,000원

○ **(체외충격파치료 산정횟수 명시)**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감소 등에 시행하는 체외충격파치료는 실시 횟수 산정방법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어 업무 혼선

- 1일당으로 산정 횟수를 명시하여 기준 명확화

□ 업무처리 방법

○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table>
<tr><th colspan="4">현 행</th><th colspan="4">개 정</th></tr>
<tr><td colspan="4">제10절 재활치료료
[치료 종류 및 금액]</td><td colspan="4">제10절 재활치료료
[치료 종류 및 금액]</td></tr>
<tr><td>분류번호</td><td>분류</td><td>산정기준</td><td>금액(원)</td><td>분류번호</td><td>분류</td><td>산정기준</td><td>금액(원)</td></tr>
<tr><td>어-4</td><td>도수치료
(1일당)</td><td>1. < 생략 >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나. < 생략 >
2. ~ 3. < 생략 ></td><td>36,080</td><td>어-4</td><td>도수치료
(1일당)</td><td>1. < 생략 >
가.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
나.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td><td>68,000</td></tr>
<tr><td>어-5</td><td>체외
충격파
치료</td><td>1. < 생략 >
2.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 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
3. < 생략 ></td><td>42,030</td><td>어-5</td><td>체외
충격파
치료
(1일당)</td><td>1. < 생략 >
2.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
3.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able>

12. 예방접종비용 개선

□ 관련 규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13절 예방접종비용

□ 개정 내용

○ **(질병관리청 공고 기준 준용)**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비용 중 일부 약제만 인정하는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하여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비용 공고 백신과 동일하게 적용

□ 업무처리 방법

○ **(예방접종비용)** 호흡기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65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천식환자에 대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백신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백신과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

제13절 예방접종비용

[산정지침]

1. 〈생략〉
2. 예방접종비용은「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예{방접종비용}에 따라 해마다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산정하고,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생략〉

<table>
<tr><th>분류번호</th><th>분류</th><th>산정기준</th></tr>
<tr><td>유-1</td><td>폐렴구균
가. PCV(단백결합) 13
나. PPSV(다당질) 23</td><td>요양기간 중 총 1회 산정</td></tr>
<tr><td>유-2</td><td>인플루엔자 QIV (0.5ml)
(4가 인플루엔자백신)</td><td>요양기간 중 1년에 1회 산정</td></tr>
</table>

</td><td>

제13절 예방접종비용

[산정지침]

1. 〈생략〉
2. 예방접종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예{방접종비용}에 따라 해마다 정하는 백신(폐렴구균, 인플루엔자)과 비용,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산정하고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생략〉

<table>
<tr><th>분류번호</th><th>분류</th><th>산정기준</th></tr>
<tr><td>유-1</td><td>폐렴구균
가. <삭제 2025. 12. 31. >
나. <삭제 2025. 12. 31. ></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유-2</td><td>인플루엔자
이하 <삭제 2025. 12. 31. ></td><td>현행과 같음</td></tr>
</table>

</td></tr>
</table>

13. 문구 및 용어정비 등 개선

□ 개정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변경 내역 반영,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서식 개정, 모호한 인정기준, 어려운 용어 등 정비

항목	사유	산정기준(서식) 문구 개정 내용
보청기 [별표1]	산정기준 인용 및 자문근거 정비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이비인후과 전문의 → 이비인후과 자문의사
관절가동범위검사 [별표1]	어려운 용어 정비	▪ 상지, 하지, 수부 → 팔, 다리, 손
재활보조기구 [별표2] 제2절	지급대상자 기준 명확화 및 수리 용어 정비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의 대상자 인정기준 → 별표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 수리 → 교체(소모품 포함)
		▪ 전동스쿠터 → 의료용 스쿠터
		▪ 의지 → 의지(義肢)
발급수수료 [별표2] 3절	'24.7.1.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 진료계획서용 소견서
	토탈서비스 최초요양급여신청(대행) 수수료 문구 정비	▪ 신청(대행) → 신청대행
화상약제 및 치료재료 [별표2] 제4절	어려운 용어 정비	▪ 체표면적, 창상 → 신체표면, 상처
처방 및 검수료 [별표2] 제5절		▪ 의지, 의안 → 의지(義肢), 의안(義眼)
치료보조기구 [별표2] 제7절		▪ 자가도뇨기구 → 자가도뇨기기(소변 자가배출기)
재활치료료 [별표2] 제10절	체외충격파치료 인정 기준 정비 및 어려운 용어정비	▪ 1일당 산정횟수 명시
		▪ 유합, 연하장애 임상평가, 연하장애, 연하 → 유합(아물음), 삼킴장애 임상평가, 삼킴장애, 삼킴
예방접종비용 [별표2] 제13절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른 만나이 통일법으로 문구정비	▪ 65세 미만으로 명시

□ 업무처리 방법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table>
<tr><th>행위목록</th><th>분류</th><th>분류번호</th><th>산정기준</th></tr>
<tr><td>제2장 검사료</td><td>관절가동범위검사</td><td>너-773</td><td>다발성 병변으로 같은 날 여러 부위에 검사를 실시한 경우 상지, 하지, 수부(신체의 양측은 별개 부위로 본다)로 나누어 각각 산정한다.</td></tr>
<tr><td>장애인 보조기기</td><td>보청기</td><td>타-34</td><td>1. 편측: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정한 편측 보청기 인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한다.
가.~ 나. < 생략 >
2. 양측: 업무상 재해로 양측 청력 장애가 발생한 자로서 위 제1호 편측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정한 양측 보청기 인정기준 중 연령제한 기준을 제외한 모든 청력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로 청각재활이 어렵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을 제외한다.</td></tr>
</table>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 ~ <중략>. 다만,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또는 전동스쿠터)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의 별표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td><td>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table>
<tr><th>행위목록</th><th>분류</th><th>분류번호</th><th>산정기준</th></tr>
<tr><td>제2장 검사료</td><td>관절가동범위검사</td><td>너-773</td><td>다발성 병변으로 같은 날 여러 부위에 검사를 실시한 경우 팔, 다리, 손(신체의 양측은 별개 부위로 본다)로 나누어 각각 산정한다.</td></tr>
<tr><td>장애인 보조기기</td><td>보청기</td><td>타-34</td><td>1. 편측: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가.~ 나. < 생략 >
2. 양측: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
3. ---------- 이비인후과 자문의사가 ----------.</td></tr>
</table>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 ~ <중략> 다만,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또는 의료용스쿠터)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2. ~ 3. <생략>
4. 상지의지는 ~ 이하 <생략>
5. 하지의지는 ~ 이하 <생략>
6. 넓적다리의지는 타-14-1(공압식 또는 유압식)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 의사의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넓적다리 의지를 지급하며, ~ 이하 <생략>
7. <생략>
8. ~ <중략>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 할 수 있다. < 생략 >
9. <생략>
가. <생략>
나.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 이하 <생략>
다.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 이하 <생략>
라. <생략>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 의지
<table><tr><th>구분</th><th>분류번호</th><th>분 류</th><th>지급대상</th><th>금액(원)</th><th>내구연한</th></tr><tr><td rowspan="2">팔 의지(義肢)</td><td>타-3-1다</td><td>위팔 의지(義肢)-미관형(실리콘형)</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tr><td>타-5-1다</td><td>아래팔 의지(義肢)-미관형(실리콘형)</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tr><td rowspan="2">다리 의지(義肢)</td><td>타-14-1</td><td>넓적다리 의지(義肢)(A-K prosthesis)(공압식 또는 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tr><td>타-15</td><td>넓적다리 의지(義肢)(A-K prosthesis)(인공지능식: Intelligent Control Type)</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table></td>
<td>2. ~ 3. < 생략 >
4. 팔 의지(義肢)는 ~ 이하 <생략>
5. 다리 의지(義肢)는 ~ 이하 <생략>
6. 넓적다리의지(義肢)는 타-14-1(공압식 또는 유압식)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 의사의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넓적다리의지(義肢)를 지급하며, ~ 이하 <생략>
7. <생략>
8. ~ <중략> 교체(소모품 포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 할 수 있다. < 생략 >
9. <생략>
가. <생략>
나. 넓적다리 의지(義肢)(공압식 또는 유압식): ~ 이하 <생략>
다. 넓적다리 의지(義肢)(인공지능식): ~ 이하 <생략>
라. <생략>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 의지
<table><tr><th>구분</th><th>분류번호</th><th>분 류</th><th>지급대상</th><th>금액(원)</th><th>내구연한</th></tr><tr><td rowspan="2">팔 의지(義肢)</td><td>타-3-1다</td><td>위팔 의지(義肢)-미관형(실리콘형)</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tr><td>타-5-1다</td><td>아래팔 의지(義肢)-미관형(실리콘형)</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tr><td rowspan="2">다리 의지(義肢)</td><td>타-14-1</td><td>넓적다리 의지(義肢)(A-K prosthesis)(공압식 또는 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tr><td>타-15</td><td>넓적다리 의지(義肢)(A-K prosthesis)(인공지능식: Intelligent Control Type)</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table></td></tr>
</table>

현 행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팔 의지	타-38	위팔 의지 소켓 교환(미관형)
	타-38-2	위팔 의지 소켓 교환(기능형)
	타-38-3	위팔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타-38-4	위팔 의지 실리콘라이너 교환
	타-39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타-39-1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타-41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미관형)
	타-41-2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기능형)
	타-41-3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타-41-4	아래팔 의지 실리콘라이너 교환
	타-45-2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타-45-3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타-45-14	위팔 의지 폼카바 교환
	타-45-15	위팔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다리 의지	타-46-1	넓적다리 의지 허리벨트 교환
	타-47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타-47-1	넓적다리 의지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지능식)
	타-47-2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타-48-1	넓적다리 의지 발목장식 교환(고기능형)
	타-50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타-52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타-52-2	넓적다리 의지 대퇴보자기 교환(일반형)
	타-53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타-54-1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타-54-2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타-55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타-56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타-58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타-59-1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타-59-5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타-59-6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타-59-12	종아리 의지 실리콘 슬리브 교환
전동 스쿠터	타-88	10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타-88-1	10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타-88-2	10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타-88-3	10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타-89	11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타-89-1	11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타-89-2	11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타-89-3	11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타-90	12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타-90-1	12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타-90-2	12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타-90-3	12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개 정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팔 의지(義肢)	타-38	위팔 의지(義肢) 소켓 교환(미관형)
	타-38-2	위팔 의지(義肢) 소켓 교환(기능형)
	타-38-3	위팔 의지(義肢) 소켓 교환(실리콘형)
	타-38-4	위팔 의지(義肢) 실리콘라이너 교환
	타-39	위팔 의지(義肢) 관절장식 교환
	타-39-1	위팔 의지(義肢)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타-41	아래팔 의지(義肢) 소켓 교환(미관형)
	타-41-2	아래팔 의지(義肢) 소켓 교환(기능형)
	타-41-3	아래팔 의지(義肢) 소켓 교환(실리콘형)
	타-41-4	아래팔 의지(義肢) 실리콘라이너 교환
	타-45-2	팔꿈치관절 의지(義肢) 장식 교환(기능형)
	타-45-3	아래팔 의지(義肢) 장식 교환
	타-45-14	위팔 의지(義肢) 폼카바 교환
	타-45-15	위팔 의지(義肢) 스타키넷트 교환
다리 의지(義肢)	타-46-1	넓적다리 의지(義肢) 허리벨트 교환
	타-47	넓적다리 의지(義肢) 무릎관절장식 교환
	타-47-1	넓적다리 의지(義肢)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지능식)
	타-47-2	무릎관절 의지(義肢) 무릎관절장식 교환
	타-48-1	넓적다리 의지(義肢) 발목장식 교환(고기능형)
	타-50	넓적다리 의지(義肢) 폼카바 교환
	타-52	넓적다리 의지(義肢) 스타키넷트 교환
	타-52-2	넓적다리 의지(義肢) 대퇴보자기 교환(일반형)
	타-53	종아리 의지(義肢) 폼카바 교환
	타-54-1	종아리 의지(義肢) 스타키넷트 교환
	타-54-2	종아리 의지(義肢)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타-55	넓적다리 의지(義肢)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타-56	종아리 의지(義肢) 장식 교환
	타-58	종아리 의지(義肢) 콜셋밴드 교환
	타-59-1	다리 의지(義肢) 파이프어답터 교환
	타-59-5	엉덩이관절 의지(義肢) 장식 교환
	타-59-6	엉덩이관절 의지(義肢) 소켓 교환
	타-59-12	종아리 의지(義肢) 실리콘 슬리브 교환
의료용 스쿠터	타-88	10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의료용스쿠터)
	타-88-1	10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의료용스쿠터)
	타-88-2	10인치 타이어 교환(의료용스쿠터)
	타-88-3	10인치 튜브 교환(의료용스쿠터)
	타-89	11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의료용스쿠터)
	타-89-1	11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의료용스쿠터)
	타-89-2	11인치 타이어 교환(의료용스쿠터)
	타-89-3	11인치 튜브 교환(의료용스쿠터)
	타-90	12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의료용스쿠터)
	타-90-1	12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의료용스쿠터)
	타-90-2	12인치 타이어 교환(의료용스쿠터)
	타-90-3	12인치 튜브 교환(의료용스쿠터)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지급원칙]

1. ~ 4. < 생략 >

5.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 생략 >

6. ~ 11. < 생략 >

12.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보험급여청구서의 확인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다른 의료기관의 요양비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청구한 경우에도 요양비가 발생한 의료기관별로 각각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13. ~ 17. < 생략 >

[수수료]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너6-1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20,000	20,000	20,000	20,000
너17-1	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대행) 수수료	10,000	10,000	10,000	10,000
너17-2	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대행) 수수료 -10일 이내	20,000	20,000	20,000	20,000

</td><td>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지급원칙]

1. ~ 4. < 생략 >

5. 진료계획서용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 < 생략 >

6. ~ 11. < 생략 >

12. ----------확인,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하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다른 의료기관의 요양비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청구한 경우에도 요양비가 발생한 의료기관별로 각각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13. ~ 17. < 생략 >

[수수료]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너6-1	진료계획서용 소견서	20,000	20,000	20,000	20,000
너17-1	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 대행 수수료	10,000	10,000	10,000	10,000
너17-2	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 대행 수수료 -10일 이내	20,000	20,000	20,000	20,000

</td></tr>
<tr><td>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산정지침]

1. <생략>

2.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40% 이상이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30% 이상으로 사용가능한 자기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되, 창상치유를 위한 드레싱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이하 <생략>

3. <생략>

</td><td>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산정지침]

1. <생략>

2.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신체표면의 40% 이상이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신체표면의 30% 이상으로 사용가능한 자기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되, 상처치유를 위한 드레싱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이하 <생략>

3. <생략>

</td></tr>
</table>

현 행

제5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산정지침]

1. <생략>

2. <생략>

가. 의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나.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안과

다. ~ 라. ~ <생략>

[처방 및 검수료]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러-1	의지(미관형 팔 의지 제외)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러-2	미관형 팔 의지·의지 이외의 품목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제7절 치료보조기구

[지급원칙]

1. 치료보조기구는 해당 유형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급하되, 자가도뇨기구는 월 1개를 지급한다.

2. <생략>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분류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머-4	자가도뇨기구	척수손상 등으로 인하여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배뇨장애가 있고 잔뇨량이 100cc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자가도뇨기구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생략>

개 정

제5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산정지침]

1. <생략>

2. <생략>

가. 의지(義肢):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나.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義眼): 안과

다. ~ 라. ~ <생략>

[처방 및 검수료]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러-1	의지(義肢) (미관형 팔 의지(義肢) 제외)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러-2	미관형 팔 의지(義肢)·의지(義肢) 이외의 품목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제7절 치료보조기구

[지급원칙]

1. 치료보조기구는 해당 유형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급하되, 자가도뇨기기(소변 자가배출기)는 월 1개를 지급한다.

2. <생략>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분류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머-4	자가도뇨기기(소변 자가배출기)	척수손상 등으로 인하여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배뇨장애가 있고 잔뇨량이 100cc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자가도뇨기기(소변 자가배출기)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생략>

현 행

제10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어-5	체외충격파치료	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 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 또는 ~ 이하 <생략> 2. ~ 3. <생략>

2. 검사료

분류번호	분 류	산정기준	금액(원)
여-7	연하장애 임상평가 (Clinical evaluation of Swallowing Diffculty)	1. 연하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0분 이상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구강인두기능 신체사정 및 연하 시 증상 사정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 2. <생략>	<생략>

제13절 예방접종비용

[산정지침]

1. 만65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환자에게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연령기준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관리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2. ~ 3. 생략

개 정

제10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어-5	체외충격파치료	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 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 또는 ~ 이하 <생략> 2. ~ 3. <생략>

2. 검사료

분류번호	분 류	산정기준	금액(원)
여-7	삼킴장애 임상평가 (Clinical evaluation of Swallowing Diffculty)	1. 삼킴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0분 이상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구강인두기능 신체사정 및 삼킴 시 증상 사정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 2. <생략>	<생략>

제13절 예방접종비용

[산정지침]

1. 65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환자에게 ~ < 생략 >

2. ~ 3. < 생략 >

Ⅳ 적용시기

○ **(시행일)** 2026. 1. 1. 진료분 부터

○ **(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종전 고시를 따름

○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2] 제2절 재활보조기구와 관련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2] 제3절 개정 내용은 이 고시 시행이후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수수료부터 적용

별첨 1 재활보조기구 참고자료

□ 유형별 팔의지 비교

구분		금액(원)	모양	현가방법	비고
위팔 의지	미관형 (급여)	740,000			▪ 하네스를 착용 후 장착 ▪ 하네스로 인한 겨드랑이와 어깨 통증 발생, 무겁고 외관상 부자연스러움 ▪ 미관형 의수는 PVC 재질과 실리콘 재질 중 하나를 선택 ▪ 기능형 의수는 잡기 기능 장치 있으며, 기능형 의수와 후크 모양 중 선택
	기능형 (급여)	1,490,000			
	실리콘형 (신설)	2,278,550			▪ 락장치로 장착 ▪ 착용하기 쉽고, 실리콘 재질로 세척 가능, 신체와 일체감 및 외관상 좋음 ▪ 소켓이 PP재질로 가벼움
아래팔 의지	미관형 (급여)	650,000			▪ 하네스(끈) 착용 후 장착 ▪ 하네스로 인한 겨드랑이와 어깨 통증 발생, 무겁고 외관상 부자연스러움 ▪ 미관형 의수는 PVC 재질과 실리콘 재질 중 하나를 선택 ▪ 기능형 의수는 잡기 기능 장치 있으며, 기능형 의수와 후크 모양 중 선택
	기능형 (급여)	980,000			
	실리콘형 (신설)	1,581,340			▪ 락장치로 장착 ▪ 착용하기 쉽고, 실리콘 재질로 세척 가능, 신체와 일체감 및 외관상 좋음 ▪ 소켓이 PP재질로 가벼움

□ 급여 신설 품목

분류명	제품사진		기능	비급여 가격
위팔 의지 (미관형-실리콘형)			▪ 어깨끈(하네스)를 사용하지 않아 겨드랑이 및 어깨부위 통증 없음 ▪ 실리콘 재질로써 세척이 용이하며 위생적 ▪ 가볍고 변색, 마모, 오염에 강하며 내구성 우수 ▪ 소켓과 의지 연결부분(아이스락)으로 가벼운 밀착형	2,300천원 ~ 4,500천원
아래팔 의지 (미관형-실리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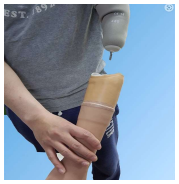			1,500천원 ~ 3,500천원
위팔 의지 소켓 교환 (기능형)			▪ 절단부위와 의지 연결	800천원 ~ 1,200천원
위팔 의지 소켓 교환 (실리콘형)			▪ 절단부위와 의지 연결	700천원 ~ 1,200천원
위팔 의지 실리콘라이너 교환			▪ 절단면의 피부 보호를 위해 감싸는 부품	450천원 ~ 1,000천원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기능형)			▪ 말단 장치의 고정 및 회전기능 장치 (손목장치)	400천원 ~ 800천원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실리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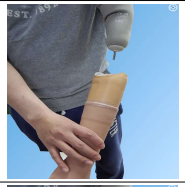		▪ 절단부위와 의지 연결	450천원 ~ 1,200천원
아래팔 의지 실리콘라이너 교환			▪ 절단면의 피부 보호를 위해 감싸는 부품	450천원 ~ 1,200천원
넓적다리 의지 대퇴보자기 교환(일반형)			▪ 마찰력 없는 보자기로 절단면을 감싸는 소모품	85천원 ~ 150천원

□ 휠체어 수리료 신설 품목

분류명		제품사진	비급여 가격
활동형 휠체어	시트 교환	 ① 등받이 ② 등받이 스트랩, 등받이 시트 ③ 사이드가드(클로스가드) ④ 좌석벨트, 좌석시트 ⑧ 앞바퀴 ⑨ 주차 브레이크 ⑩ 뒷바퀴(운전휠 ⑪ 핸드림(푸쉬림	75천원 ~ 100천원
	등받이 교환		100천원
	뒷바퀴 교환		100천원 ~ 400천원
	핸드림 교환		70천원 ~ 100천원

별첨 2 간편형 다차원심리검사 참고자료

□ 간편형 다차원심리검사지 (15문항)

번호	문항	예	아니오
1	치료해도 통증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2	대부분의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3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4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5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6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7	주변 사람들은 색안경을 쓰고 나를 보는 것 같다		
8	내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9	주변 사람들이 왜 그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지 원망스럽다		
10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11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2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13	나의 앞날은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을 것 같다		
14	현재 상태를 참을 수 없다		
15	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하기 힘들다		

별첨 3 이송료(근거리 대중교통 수단) 정액제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1 추진 배경

○ 지역별, 교통수단별, 기타 할인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는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 요금을 전국 단일기준(정액제) 적용으로 고객 편익 향상

* 시내·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철 및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

2 관련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6절 이송료

3 개정 내용

○ **(실비 → 정액제)**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 이송료를 전국 단일기준(정액제) 적용

-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 이용시 편도 2,000원, 1일 최대(왕복) 4,000원 적용하되, 실제 소요비용이 편도 2,000원을 초과한 경우 실제 소요비용 지급

4 업무처리 방법

○ **(이송료 청구)** 산재근로자가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 이용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이송의 범위)에 따른 이송료 청구

○ **(지급액 산정)** 의료기관 통원확인서, 자문의사회의 참석여부 등 확인하여 실제 소요비용에 관계없이 편도 2,000원, 왕복 4,000원 정액 지급

- 다만, 편도 정액요금을 초과한 경우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지급 가능

*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중교통비 무료 이용 대상자는 지급불가

○ **(전산입력)** 기존 근거리 대중교통 이송수단별(마을버스, 버스, 전철) 선택을 근거리 대중교통으로 통합 및 정액 초과 시 추가비용 입력 가능토록 개선

〈 노동보험 이송료 처리화면(2.2.4.1) 개선 전·후 〉

* [이송수단] 노동보험 전산입력 방법 (2.2.4.1. 간병료.이송비.보조기 청구서 처리 화면)
  - 이송비처리 버튼 연계 ≫ 이송비 지급처리 세부내역 ≫ 이송수단 목록

'25년 근거리 대중교통 이송수단(기존)	'26년 근거리 대중교통 이송수단(개선)
마을버스 버스 전철	근거리 대중교통 - 정액요금 근거리 대중교통 - 실비요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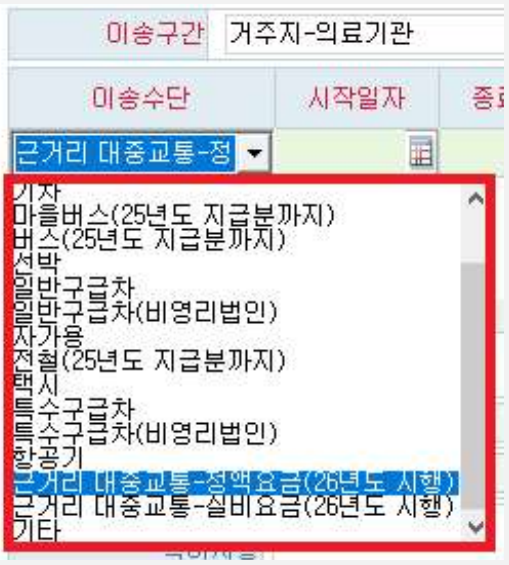

- **(근거리 대중교통 - 정액요금)** 정액요금(편도 2,000원, 왕복 4,000원) 이하 비용은 '이송수단' 「근거리 대중교통 - 정액요금」 선택하여 입력
- **(근거리 대중교통 - 실비요금)** 정액요금(편도 2,000원, 왕복 4,000원) 초과시 '이송수단' 「근거리 대중교통 - 실비요금」 선택하여 실제 소요비용 입력

5 행정 사항

○ **(시행일)** '26. 1. 1. 발생분 부터

* 동 기준은 이송료 발생이 시행일 이후 건에 대하여 적용 (주의: 접수일 기준 아님)

○ **(의료기관 안내)**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 정액제 도입에 따른 이송료 청구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간병료/이송비/보조기 청구 - 이송비 입력화면 안내